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7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완료 후 결산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(안제22조의2제2항)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2조의2제2항 중 “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” 를 “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① (생략)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<u>3개</u>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2개</u> 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	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2개</u> 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<u>10일</u>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----- -----. ③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 중 “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”를 “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① (생 략)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<u>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</u>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 <u>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